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정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542 발의연월일: 2022. 5. 11.

발 의 자:김정재・김상훈・김석기

김형동 · 김영식 · 김성원

서일준 · 정점식 · 이주환

정우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·지원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, 그 중에서도 특히 고령자, 장애인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더욱 중요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.

그런데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진로개발 및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현행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중요시 하여야 할 대상에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여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업 훈련을 받을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(안 제3조제4항제11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4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	제3조(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
원칙) ① ~ ③ (생 략)	원칙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	4
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	
중요시되어야 한다.	
1. ~ 10. (생 략)	1. ~ 10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11.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
	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교 밖
	<u>청소년</u>
⑤ ~ ⑧ (생 략)	⑤ ~ ⑧ (현행과 같음)